

의안번호	2218619
의 퇴 인	최혁진의원
회 답 일	2026.4.28.
추계번호	26B234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억 9,400만원(연평균 3,88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탄소예산의 설정 (안 제7조의2)	194	-	-	-	-	194	39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의2(탄소예산의 설정) 신설	정부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도 이후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 허용 총량(이하 “탄소예산”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다음 각 호의 연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만큼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야 함 (제1항) 1. 2030년: 40퍼센트 2. 2035년: 65퍼센트 3. 2040년: 80퍼센트 4. 2045년: 90퍼센트	
3	안 제52조(사회연대경조직 활성화 등)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에너지절약, 자원순환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이하 “사회연대경제조직”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과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제1항)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정부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업과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가 해당 지역의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지원 및 지역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의2(탄소예산의 설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2	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제3호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3	안 제52조(사회연대경제조직 활성화 등)		·제3호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업과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가 해당 지역의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지원 및 지역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수준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탄소예산을 산출할 경우,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예산 설정은 고도의 분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 잔여 탄소예산 현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8조제4항¹⁾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정부가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탄소예산 산출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주한 “탄소가격 부과 체계 개편방안 연구”(2021년, 1억 6,000만원), “202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2023년, 3억원),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향후 NDC 수립전략 마련”(2023년, 1억 2,250만원)을 유사사례로 준용하여,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을 1억 9,400만원으로 가정함
 -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 기간 중 첫해에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1)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 추계결과, 정부가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2027년에만 1억 9,400만원이 발생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정의(안 제2조)	194	-	-	-	-	194	39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